등록면제 확인신청 (법 제11조)

[대상] 법 제10조의 등록대상인 신규화학물질, 연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중에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시행령 제11조)

1.전량수출용으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연간10톤 이하) 2.전량수출용 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는 물질화학 (연간10톤 이하)	연(年)단위
3.과학적 실험·분석용, 화학연구용	최초 1회
4.연구개발용 화학물질나. 생산공정의 개선·개발용가. 화학물질·제품 개발용나. 생산공정의 개선·개발용다.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용(사업장)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시범생산용	연구·개발단위
5. 고분자화합물(①수평균분자량 1만 이상, ②1천~1만 미만)	최초 1회
6. 표면처리의 대상물질에 작용시켜 생성된 물질,	최초 1회
7. 비분리중간체 8. 기술적으로 유출이 차단된 분리중간체	최초 1회



등록면제 확인신청 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에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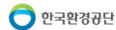


등록면제 신청 전 화학물질 정보확인

- **1. 정부고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u>r</u>) ⇒ 행정규칙
 -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 제2018-11호)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 제2015-92호)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9호)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8-52호)

2.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확인 http://ncis.nie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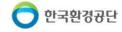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검색화면



- ※ 검색 후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인 경우 등록면제 신청
-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 자료의 작성방법 / 시행규칙 별표5

자료작성 유의사항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용

- ▶ 시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시약안내서(브로슈어), 시약(라벨) 사진, 제조사 홈페이지의 캡쳐 사진 등으로 물질명, 구조식, CAS No등 확인 가능한 자료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생산용 등 시장에 직접 출시되지 아니할 경우 제조·수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면제신청 가능(시행규칙 제7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 동일 연구개발 단위(기간) 내에서는 신청한 총사용량 범위 내에서 분할 수입 가능
- ▶ 화학물질의 CAS No. 등 분류정보 (신규화학물질로 Cas No가 없는 경우, 제조사의 확인서 등)
- ▶ (제조사·판매사에서) 물질의 명칭, 구조식 등 자료 보호를 요구할 경우 '자료보호'를 함께 신청
- ▶ 연구개발계획에 개발공정도, 화학물질의 용도(역할)
- ▶ 0.1톤 이상일 경우 연구기간 종료 후 사후처리결과보고



법령 이행안내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업무>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팀 032-590-4734~35, 4737, 4742

